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관련 기능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31.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제13조제3항제13호 중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를 “국군체육부대”로 한다.

제3장(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 공무원 72명(고위공
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
로 보아 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으로 이체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소속기관)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둔다.</u> <u>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u>	<u>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u>
제13조(인사복지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u>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u> 14. 삭제 15. ~ 33. (생략) <u>제3장 국립서울현충원</u>	제13조(인사복지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국군체육부대</u> ----- ----- 15. ~ 33.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17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삭 제>

제18조(원장)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삭 제>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제1항, 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
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8